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필례 의원)

의 안 번 호	20-120
--------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0. 8. .

발의자: 이필례, 권영숙, 김기석

김성희, 김진천, 장덕준

1. 제안이유

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,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공로자 표창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1조
- 나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4. 조례안: 붙임

5. 예산조치: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0. 8. 6. ~ 2020. 8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,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착한가격업소”란 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·품질·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지정 및 취소)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“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.

제5조(이용 활성화)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“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”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“착한가격업소” 지정 표지판 제작·교부
2.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
3. 마포구 소식지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, SNS 등을 활용한 홍보
4.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
5.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운영현황 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8조(영업자의 협조)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표창)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(관 계 법령)

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이용 활성화(제5조)
- 지원(제6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 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석혜영
연락처	02-3153-8562